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복지 및 학대방지 조례안

(권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8
----------	------

발의년월일 : 2018년 3월 28일

발 의 자 : 권미경·신원철 의원(2명)

찬 성 자 : 김기대, 우형찬, 이윤희, 최판술,  
서윤기, 박진형, 유광상, 김인제,  
김용석(도봉), 조상호 의원(10명)

## 1. 제안이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복지 및 학대방지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시장의 실천적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복지대상반려동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제2조)

나. 반려동물복지에 대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제4조), 시민과 소유자 의무를 규정(제5조, 제6조)

다. 반려동물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반려동물 통계의 작성과 관련한 사항 규정(제6조, 제7조)

라. 반려동물 학대신고센터의 설치 (제9조) 및 벌칙규정(제13조) 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복지 및 학대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복지 및 학대방지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시장의 실천적 책무를 규정하여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가치가 평등하게 실현되는 사회를 지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중,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복지”란 각 개체별 반려동물의 생태적 고유특성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여 반려동물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며 반려동물로부터 인간이 얻는 정신적 위안에 준하는 행복감을 반려동물이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학대”란 2항의 규정에 반하거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생존을 위한 충분한 양의 사료와 수분 공급,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복지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복지 및 학대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반려동물 복지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반려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 및 치료, 입양 등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과 관련 단체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반려동물 복지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반려동물 복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구입 또는 입양하기 전 반려동물의 고유습성을 이해하고 행동학적 특성을 숙지하여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생존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

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종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⑥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문제, 사람에게 대한 공격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비반려인들에 대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⑦ 소유자 등은 반려견의 행동학적 특성을 이해하여 이에 맞는 적절한 산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복지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반려동물 복지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 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반려동물 복지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4.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 5. 반려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개최 등 반려인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반려동물 복지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반려동물 복지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복지) ① 시장은 피학대동물 또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학대신고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학대방지과 피학대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응급처치를 위해 학대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업무를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동물학대 사건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③ 학대신고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학대신고 콜센터
2. 피학대동물 구조인력 및 구조차량
3. 학대자 격리 및 조사 및 고발을 위한 인력
4. 피학대동물의 육체적·심리적 처치를 위한 의료체계
5. 입양 전까지의 임시보호 시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복지실현,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산하 구청, 대학·연구소 및 동물복지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반려동물 및 반려인 교육·전문가 양성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및 소유자 등의 교육 프로그램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복지 및 학대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벌칙 및 과태료)**법 제8조에 따른 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는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시 반려동물 복지 및 학대방지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시 반려동물 복지 및 학대방지 조례안 제9조(학대신고센터의 설치)의 학대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
- 같은 조례안 제11조(반려동물 및 반려인 교육·전문가 양성 등)제2항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양성에 따른 비용

\* 같은 조례안 다음 조항은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

-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는 서울시 기 추진하는 ‘서울서베이’ 사업과 ‘인수공통 전염병 관리 강화’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음[첨부 1]
-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복지)는 서울시 기 추진하는 ‘유기동물보호 지원’ 사업과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음[첨부 2]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는 서울시 기 추진하는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과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및 ‘동물 매개 활동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음[첨부 3]
- 제11조(반려동물 및 반려인 교육·전문가 양성 등)제1항과 제12조(교육 및 홍보)는 서울시 기 추진하는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내용중 반려동물 가족 교육, 반려동물 교실 개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물복지 활동 지원”사업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반려견주의 외출시 준수사항 점검 및 교육, 동물 보호 관련 홍보 내용이 포함되어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음[첨부 4]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학대신고센터 설치·운영비(조례안 제9조)
-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비(조례안제11조제2항)

#### 나. 전제

- 1) 학대신고센터는 1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2) 학대신고센터는 민간 위탁 운영을 전제로 하며, 설치·운영비는 사업비·인건비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설치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3)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양성에 따른 비용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4) 물가상승률 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후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 발생)

#### 라. 방법



- 학대신고센터 운영비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2018년 운영예산”을 준용하여 추계('18년 626,120천원)[참고2]
-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비는 동물복지분야 실국본부내 편성된 “2018년 전문가 양성 사업비”를 파악하여 평균금액(91,590천원)을 준용[참고1]
- 학대신고센터 운영비와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비는 1차년도부터 최근 5년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평균값 적용(1.2%)하여 산출

###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3,719,000천원(연평균 743,8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	-	-	-	-	-	-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학대신고센터 운영비 (조례안제9조)	633,000	641,000	648,000	656,000	664,000	3,245,000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사업비 (조례안제11조제2항)	92,000	93,000	94,000	96,000	97,000	474,000	
	소계(b)	725,000	734,000	742,000	752,000	761,000	3,719,000	
□ 총 비용(b-a)		725,000	734,000	742,000	752,000	761,000	3,719,000	

###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무관 최경희

☎ 02-3705-1282

e-mail : hiru90@seoul.go.kr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 학대신고센터 운영비
-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비

### 2. 세부추계내역

#### ○ 학대신고센터 운영비

- 총비용 ≒ 3,245,000천원(연평균 649,000천원)

• 총비용 =  $\sum_{i=1}^5$ (연간 학대신고센터 운영비)<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

- 연간 운영비 = {(개소 전년도 설치 · 운영비) × 소비자물가지수 평균값} × 개소수

(단위 : 천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학대신고센터 개소수	1	1	1	1	1	-
학대신고센터 운영비	633,000	641,000	648,000	656,000	664,000	3,245,000

주1 : 2018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예산 사례 준용

2 : 1차년도(2019) 운영비는 전년도(2018년)운영비(626,120천원)에 최근5년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값(1.2%) 적용하여 산출

3 : 운영비는 백만원미만 절사

자료 : 서울시 시민건강국 예산사업설명자료 재구성(2018)

· 최근 5년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평균값 : 1.2%

평균값	2013	2014	2015	2016	2017
1.2%	1.3%	1.3%	0.7%	1.0%	1.9%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비

- 총비용 ≒ 474,000천원(연평균 94,800천원)

• 총비용 =  $\sum_{i=1}^5$ (연간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비)<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

- 연간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비 = 전년도 전문가 양성 사업비 × 소비자물가지수 평균값

※ 비용추계 1차년도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비 = '18년 전문가양성사업(2개)중 평균금액[참고] × 소비자물가지수 평균값

= 91,590천원 × 1.012

(단위 : 천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비	92,000	93,000	94,000	96,000	97,000	474,000

주 :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비는 백만원미만 절사

**【참고1】 시민건강국 사업중 전문가양성사업비 현황(2018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평균액	자살예방전문가 양성교육	트라우마 전문가 양성
'18 예산현황	91,590	3,180	180,000
사업명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운영	트라우마 아카데미 운영
소관과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참고2】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예산 상세내역(2018년도)**

(단위 : 천원)

통계목	분류	예산액	산출내역
	계	626,120	
	소계	296,720	
사무관리비	일반운영	163,000	◦ 동물복지지원 관리운영비 = 163,000천원
	교육홍보	51,750	◦ 동물복지지원센터 교육 동영상제작 = 20,000천원 ◦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행정교정 등 교육 = 30,000천원 ◦ 동물보호 홍보 리플렛 제작 = 1,750천원
	입양사업	20,000	◦ 유기동물 입양행사 = 20,000천원
	홈페이지	50,000	◦ 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상용프로그램 구매 = 50,000천원
	일반운영	11,970	◦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경비 = 11,970천원
공공운영비	일반운영	15,600	◦ 차량운영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 3,600천원 ◦ 긴급구호, 동물관련 상담 전화요금 등 = 2,400천원 ◦ 감염성폐기물 위탁 관리 등 = 9,6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소계	50,000	
	긴급구호	28,000	◦ 동물구조지원 이용차량 등 = 28,000천원
	동물병원	22,000	◦ 동물병원 진료장비 구매 등 = 22,000천원
재료비	동물병원	130,000	◦ 사료,약품, 미용용품 등 동물관리물품 = 130,000천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129,000	◦ 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 129,000천원
기타보상금	자원봉사	4,800	◦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 4,800천원

자료: 2018년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예산 실 사례 준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첨부1】 제7조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서울시 추진사업)**

○ 사업명 : 서울서베이

- 사업개요

사업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총사업비	총1,006,770천원 [국비] [시비]1,006,770천원(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서울도시정책지표 조사 및 분석
사업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접수행 <input type="checkbox"/> 자치단체 보조 <input type="checkbox"/> 민간이전 <input type="checkbox"/> 출연출자 <input type="checkbox"/> 민간위탁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 예산세부내역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무비 129,376,949원 = 129,377천원</li> <li>제경비 678,985,500원 = 678,986천원</li> <li>일반관리비 36,201,570원 = 36,202천원</li> <li>이윤 및 부가가치세 117,836,109원 = 117,837천원</li> <li>보고서발간 및 평가수당 13,900,000원 = 13,900천원</li> </ul>

○ 사업명 : 인수공통 전염병 관리 강화

회 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사업성격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상	<input type="checkbox"/> 투자
사업내용	○ 반려동물 질병 모니터링 사업 ○ 길고양이 SFTS 감염 실태 조사		
사업비	49,000천원 [국비]	[시비]49,000천원	
(당해년도)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예산세부내역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려동물 질병 모니터링 시료 배송비 15,000원*200회 = 3,000</li> <li>도심내 길고양이SFTS실태조사 배송비 15,000원*100회 = 1,500</li> </ul>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려동물 질병모니터링 진단키트 구매 9,500원*1,000건 = 9,500</li> <li>도심내 길고양이SFTS실태조사 혈청검사 재료비 50,000원*500건 = 25,000</li> </ul>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인수공통(반려동물) 질병 모니터링용 혈액 채혈비 10,000원*1,000마리 = 10,000천원

○ 제정조례안 관련 서울시 기추진 내역

조례안 규정	2018 예산액 (단위:천원)	비 고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1,055,770	▶ 사업명 : 서울서베이(1,006,770천원)내용 중 - 서울도시정책지표 중 ‘반려동물 여부 및 취득경로’ 등 실태조사 및 서울통계 자료 관리(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 사업명 : 인수공통 전염병 관리 강화(49,000천원) - 반려동물 질병 모니터링 사업, 길고양이 SFTS 감염 실태 조사

자료 : 201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예산사업설명서 재구성.

**【첨부2】 제8조 반려동물의 구조·보호 (서울시 추진사업)**

○ 사업명 : 유기동물보호 지원

- 사업개요

회 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사업성격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상 <input type="checkbox"/> 투자
사업내용	○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지원		
사업비 (당해년도)	716,000천원	[국비]	[시비]716,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716,000천원	[기타]

- 예산세부내역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조치 160,000원*8,500마리*50% = 680,000천원</li> <li>○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 36,000,000원 = 36,000천원</li> </ul>

○ 사업명 :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회 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사업성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상 <input type="checkbox"/> 투자
사업내용	○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18.1~12 - 사업내용 :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 - 주요도입시설 · 위급동물의 구조, 치료 및 입양동물 중성화수술을 위한 동물병원 · 동물학대 및 동물사육방법 상담 및 교육 시설 · 유기동물 입양카페 및 홍보 시설 · 지역 동물보호활동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 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당해년도)	626,120천원	[국비]	[시비]626,12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예산세부내역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복지지원센터 일반관리비 13,583,333원*12개월 = 163,00천원</li> <li>○ 유기동물 입양행사 1,000,000원*2회*10개월 = 20,000천원</li> <li>○ 센터내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운영 93,720,000원*1식 = 93,720천원</li> </ul>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 소모품 구매비 20,000,000원*1식 = 20,000천원
공공운영비	○ 전화료 등 15,600,000원 = 15,600천원
재료비	○ 센터운영용품(사료,약품,패드 등 동물관리물품 130,000,000원*1식 = 130,000천원
전산개발비	○ 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129,000,000원*1식 = 129,000천원
기타보상금	○ 동물복지지원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4,800,000원 = 4,8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동물보호관리를 위한 장비구입 50,000,000원*1식 = 50,000

○ 제정조례안 관련 서울시 기추진 내역

조례안 규정	2018 예산액 (단위:천원)	비 고
제 8 조 ( 반 려 동 물 의 구조 · 보호)	1,346,120	▶ 사업명 : 유기동물보호 지원(720,000천원) -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지원 ▶ 사업명 :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626,120천원) - 위급동물의 구조, 치료 및 유기동물 입양, 동물보호 시설 교육, 홍보 등

자료 : 2018 시민건강국 예산사업설명서 재구성.

**【첨부3】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서울시 추진사업)**

○ 사업명 :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

- 사업개요

회 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사업성격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상 <input type="checkbox"/> 투자
사업내용	○ 동물 보호 교육, 홍보, 상담 및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사업비	144,000천원	[국비]	[시비]144,000천원
(당해년도)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예산세부내역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140,000천원 ○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수당) 100,000원*15명*4회 = 6,000천원 ○ 동물보호시민회의운영(발표자수당) 2,000,000원*1식 = 2,000천원 ○ 동물보호시민회의운영(자료집인쇄) 1,000,000원*2식 = 2,000천원 ○ 동물보호교육(초등학생 교육) 20,000,000원 = 20,000천원 ○ 동물보호교육(미취학아동 교육) 15,000,000원 = 15,000천원 ○ 반려동물 가족교육 10,000,000원 = 10,000천원 ○ 동물보호 홍보 활동(버스승강장 등) 20,000,000원 = 20,000천원 ○ 영상제작 15,000,000원 = 15,000천원 ○ 유기동물 보호 대시민 홍보 50,000,000원 = 50,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동물보호단체 등 간담회비 40,000원*10명*10회 = 4,000천원

○ 사업명 :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

- 사업개요

회 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사업성격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상 <input type="checkbox"/> 투자
사업내용	○ 자치구 단위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동물 보호 사업 발굴 유도하기 위한 자치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동물 복지 사업 추진(반려견놀이터 조성,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등 의료 지원, 동물 보호 교육 및 홍보, 유기동물 구조 보호 및 입양 등)		
사업비	200,000천원	[국비]	[시비]200,000천원
(당해년도)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예산세부내역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동물복지사업 지원 100,000,000원 = 100,000천원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자치단체지분보조	○ 자치구 동물복지사업 지원 100,000,000원 = 100,000천원

○ 사업명 : 동물 매개 활동 사업

- 사업개요

사업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사업위치	서울시 전역
총사업비	총 450,000천원 [국비] [시비]450,000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 민간과 시가 협력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민의식 개선 및 복지 향상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동물과 사람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정책 목표 달성
사업형태	<input type="checkbox"/> 직접수행 <input type="checkbox"/> 자치단체 보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이전 <input type="checkbox"/> 출연출자 <input type="checkbox"/> 민간위탁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시행주체	민간단체

- 예산세부내역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활동, 자문, 선정 홍보 등 20,000,000원 = 2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동물매개활동 380,000,000원 = 380,000천원 ○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 50,000,000원 = 50,000천원

○ 제정조례안 관련 서울시 기추진 내역

조례안 규정	2018 예산액 (단위:천원)	비고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79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144,000천원)내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보호 전문가 및 시민단체 참여로 사업 추진,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등</li> </ul> </li> <li>▶ 사업명 :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20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단위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동물보호 사업 발굴, 적극적인 시민 참여로 동물보호를 체감할 수 있는 시민밀접형 동물 복지 사업 추진 등</li> </ul> </li> <li>▶ 사업명 : 동물 매개 활동 사업(450,000천원)내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과 시가 협력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민의식 개선 사업(동물매개활동 봉사자 양성 등)</li> </ul> </li> </ul>

자료 : 2018 시민건강국 예산사업설명서 재구성.



**【첨부4】 제11조 반려동물 및 반려인 교육, 제12조 교육 및 홍보(서울시 추진사업)**

○ 사업명 :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

- 사업개요

회 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사업성격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상 <input type="checkbox"/> 투자
사업내용	○ 동물 보호 교육, 홍보, 상담 및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사업비	144,000천원	[국비]	[시비]144,000천원
(당해년도)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예산세부내역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140,000천원 ○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수당) 100,000원*15명*4회 = 6,000천원 ○ 동물보호시민회의운영(발표자수당) 2,000,000원*1식 = 2,000천원 ○ 동물보호시민회의운영(자료집인쇄) 1,000,000원*2식 = 2,000천원 ○ 동물보호교육(초등학생 교육) 20,000,000원 = 20,000천원 ○ 동물보호교육(미취학아동 교육) 15,000,000원 = 15,000천원 ○ 반려동물 가족교육 10,000,000원 = 10,000천원 ○ 동물보호 홍보 활동(버스승강장 등) 20,000,000원 = 20,000천원 ○ 영상제작 15,000,000원 = 15,000천원 ○ 유기동물 보호 대시민 홍보 50,000,000원 = 50,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동물보호단체 등 간담회비 40,000원*10명*10회 = 4,000천원

○ 사업명 : 동물복지 활동 지원

- 사업개요

사업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사업위치	서울시 전역
총사업비	총 41,300천원 [국비] [시비]41,300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동물보호 관련 활동 및 홍보
사업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접수행 <input type="checkbox"/> 자치단체 보조 <input type="checkbox"/> 민간이전 <input type="checkbox"/> 출연출자 <input type="checkbox"/> 민간위탁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시

- 예산세부내역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17,800천원 ○ 동물등록제 등 동물 보호 홍보물 (포스터, 전단지, 어깨띠 등) 750원*20,000개 = 15,000천원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매뉴얼 책자 28,000원*100부 = 2,800천원
공공운영비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에 따른 상해보험료 5,000원*25명*12월 = 1,5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 등 간담회 500,000원*4회 = 2,000천원
기타보상금	○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급 50,000원*25명*월1.3333회*12월 = 20,000천원

○ 제정조례안 관련 서울시 기추진 내역

조례안 규정	2018 예산액 (단위:천원)	비고
제11조(반려동물 및 반려인 교육·전문가 양성 등)제1항 반려동 물 및 소유자 등의 교 육 프로그램 제12조(교육 및 홍보)	185,300	▶ 사업명 :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144,000천원)내용 중 - 반려동물 가족 교육, 반려동물 교실 개최 등 교육 - 동물보호 시민회의, 수요자 맞춤형 동물보호 교육 - 동물보호 사업 홍보(웹툰을 활용한 유기동물 예방, 올바른 반려동 물 관리 등) ▶ 사업명 : 동물복지 활동 지원(41,300천원)내용 중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총 100명 위촉)으로 반려견주의 외출시 준수사항 교육, 동물 보호 관련 홍보

자료 : 2018 시민건강국 예산사업설명서 재구성.